



• 농약의 유통 및 사용에 관한 국제 행동규약④

# 본 규약목적 위해 정부·국제기구·단체 등 협조해야

관련단체, 정보교환 절차 지원하고 규제행위 정보 접근 용이해야  
농약용기, FAO 표준라벨기준에 맞춰 라벨작업 이뤄져야

- 기술부 -

8.2.4 수입기관, 국가 또는 지역 제제업자 및 관련 거래단체는 농약에 의한 위험성을 줄이는 유통 판매행위는 물론 공정행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산업계내의 불공정 행위를 찾아내는데 당국과 협력해야 한다;

8.2.5 권장기준에 따른 사용이 인축의 건강 또는 환경에 허용될 수 없는 유해성을 나타내면 그 농약은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에 의해 회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8.2.6 농약은 가능한 허가를 받은 인증무역단체의 회원과 같은 잘 알려진 무역업자를 통하여 거래 또는 구매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8.2.7 농약판매와 관련된 사람들은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하며 정부인증 허가증(허가증이 있을 경우)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 그들이 구매자들에게 위해감소와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조언

을 제공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성자료(MSDS) 같은 충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8.2.8 위험성을 줄이고 판매자가 라벨이 되어있지 않거나 부적절한 용기에 제품에 재포장하지 않도록 소규모 농민과 기타 지방사용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일정한 포장크기 및 형태를 국내요건에 맞추어 제공해야 한다.

8.3 조달자(정부당국, 재배업자 단체, 개별 농업인)는 농약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절차를 설정하여야 하며 구매 계약시 기간이 연장된 농약의 보관, 유통 및 폐기와 관련한 요구사항이 포함하도록 고려해야 한다(4.37)

## 제9조 정보교환

9.1 정부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9.1.1 국가기구, 국제 및 지역 단체와 일반 대중그룹을 통해 농약에 대한 정보교환 네트워크의 설

립 또는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9.1.2 협조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기관 사이에 정보교환을 도모해야 한다. 교환되어야 할 정보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9.1.2.1 인간건강이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약을 금지시키거나 엄격히 제한할 수 있는 조치와 요청에 대한 추가정보:

9.1.2.2 독성, 환경 및 안전성 자료를 포함하는 농약관련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규제 및 법률 정보:

9.1.2.3 농약 규제활동과 관련된 자원과 전문지식의 이용성.

9.2. 이외에도 정부는 다음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9.2.1 농약의 위험성과 규제과정에 대하여 일반대중에 정보제공을 허용하는 법률과 규정:

9.2.2 규제과정에서 일반대중의 참여를 도모하고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는 행정 절차.

9.3 국제기구는 종합평가자료(criteria documents), 평가요약서(fact sheets), 훈련 및 기타 적절한 수단의 제공을 통해 특정농약에 대한 정보(분석방법에 대한 지침 포함)를 제공해야 한다(38).

9.4 모든 관련 단체들은:

9.4.1 정보교환 절차를 지원하고 식품의 농약잔류 및 관련 규제행위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9.4.2 국가가 본 규약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민간 대중단체, 국제기구, 정부 및 기타 관련 관계자 사이의 협조를 도모해야 한다.

## 제10조 라벨, 포장, 저장 및 폐기

10.1 모든 농약용기는 적어도 유엔식량농업기구의 표준라벨기준(good labelling practice)에 맞추어

적용가능한 지침에 따라 명확히 라벨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3).

10.2 산업계는 다음의 라벨을 사용해야 한다:

10.2.1 등록요건을 따라야 하며 판매국에서 인증된 연구와 자문기관 각각의 권고사항이 일치하는 권고사항을 포함하는 라벨:

10.2.2 적절한 언어 및 어구로 된 사용방법, 경고와 주의사항 이외에도 가능한 적절한 상징기호나 그림문자를 포함하는 라벨(3):

10.2.3 국제무역에 있어서 위험상품에 대한 국가 또는 국제적 라벨 요건을 따르고 필요한 경우 세계보건기구 위험성 분류기준을 명확히 표시한 라벨(3,35,36):

10.2.4 적절한 언어 또는 어구로 용기 재사용에 대한 경고와 폐용기의 안전한 처리 및 오염제거를 위한 지시사항을 포함하는 라벨:

10.2.5 추가적인 규약 참고에 대한 필요없이 이해할 수 있는 숫자나, 문자로 제품 각각의 lot나 batch를 명확히 한 라벨:

10.2.6 lot나 batch의 제조일(년.월)을 명확히 표시하고 그 제품의 저장안정성에 대한 관련정보를 포함하는 라벨(21).

10.3 농약산업계는 정부와 협력하여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10.3.1 농약의 포장, 저장, 폐기는 관련 유엔식량농업기구, 유엔환경프로그램, 세계보건기구 지침이나 규정 또는 가능한 경우 기타 국제적 지침에 원칙적으로 따른다 (28,28,37,39,40):

10.3.2 포장 및 재포장은 종사자가 독성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되고 그렇게 제조된 제품은 적절히 포장되고, 라벨이 이루어지고 그 내용물은 관련 품질기준을 지킬 것 이라고 책임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허가된 구역내에서만 수행된다.

10.4 정부는 식품 또는 음료수 용기에 농약의 재포

장이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필요한 규제 조항을 취해야 하며 이러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지방정부를 합법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10.5 정부는 농약산업계의 도움과 다방면의 협조로 오래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재고농약 및 폐용기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재고의 폐기 또는 오염 지역의 경우 오염제거를 위한 행동계획을 설정, 시행해야 하며 이러한 활동들을 기록해야 한다(41).

10.6 농약산업계는 다방면의 협조로 금지 또는 오래된 농약과 폐용기를 적절히 승인되고 적절한 경우 최소 위험성을 가진 재사용을 포함하여 환경에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10.7 정부, 농약산업계, 국제기구 및 농업단체는 오래된 농약과 폐용기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실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37).

### 제11조 광고

정부는 모든 매체에 라벨 지시사항, 주의사항 특히 살포장비, 적절한 개인 보호장비의 적당한 유지, 사용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어린이나 임신부 또는 용기 재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특별 주의사항과 상충되지 않도록 농약광고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11.2 농약산업계는 다음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11.2.1 광고에 사용된 모든 서술내용은 기술적으로 증명된다;

11.2.2 광고에는 직접적으로 또는 암시, 생략, 모호성 또는 과장된 주장으로 특히 제품의 안전성, 그 특성, 조성, 사용상 적합성, 공식적인 승인이나 허가와 관련하여 구매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내용이나 시각적 표현을 포함하지 않는다;

11.2.3 훈련 또는 등록된 살포자에 의해 사용되도록 법적으로 제한된 농약은 그 제한 내용이 분명하고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는 한 살포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간행물을 통해 광고

되지 않는다;

11.2.4 한 국가에서 어떤 회사나 어떤 개인도 단 일상표명으로 다른 농약 유효성분 또는 여러성분의 혼합 성분을 판매하지 않는다;

11.2.5 광고는 라벨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11.2.6 판촉물은 인종된 연구, 자문기관의 추천내용과 다른 추천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11.2.7 광고는 주장 내용이 그들이 소유하지 않은 과학적 근거를 갖고있는 것으로 보이도록 연구 결과나 기술, 과학 문헌 또는 과학전문 용어를 오용하지 않는다;

11.2.8 “안전”, “무중독”, “무해”, “무독성” 또는 “병해충종합관리에 적합”과 같은 서술내용을 포함하는 안전성에 관한 주장사항이 “지시대로 사용할 때”와 같은 적법한 문구 없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 병해충종합관리 프로그램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는 만약 규제당국에 의해 보증되고 따라서 그 주장이 적합할 경우 포함될 수 있다);

11.2.9 다른 농약 또는 기타 물질의 위해성, 유해 또는 안전성을 비교하는 서술내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11.2.10 제품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오인할 수 있는 문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11.2.11 “...로 더 많은 이익을” 또는 “높은 수량 증대”와 같은 보장이나 암시된 보장은 그러한 주장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 주어지지 않는다;

11.2.12 광고는 충분한 보호복 없이 하는 혼합 살포, 식품근처에서 사용, 어린이에 의한 또는 어린이 근처에서의 사용과 같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행동의 시각적 표현을 포함하지 않는다;

11.2.13 광고 또는 판촉물은 유엔식량농업기구

라벨지침에 서술된 것과 같이 적절한 경고문구와 상징에 관심을 갖는다(3):

- 11.2.14 기술자료는 권장 사용량, 사용횟수, 수확 전 살포간격의 준수를 포함하여 올바른 작업에 대한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 11.2.15 다른 농약과의 잘못 또는 잘못을 유도하는 비교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 11.2.16 판매촉진에 참여한 모든 직원은 판매된 제품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하며 유효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훈련받고 충분한 기술지식을 소유한다;
- 11.2.17 광고는 구매자와 사용자가 라벨을 주의깊게 읽도록 권장하거나 만약 그들이 읽을 수 없다면 그들에게 라벨을 읽어주도록 권장한다;
- 11.2.18 광고 및 판촉활동은 농약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부적절한 특혜나 선물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 11.3 국제기관이나 공공단체는 본 조항에서 벗어나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제12조 규약의 감시와 준수

- 12.1 이 규약은 정부의 관련분야, 개별로 또는 지역 그룹별로 유엔의 적절한 기구 및 조직, 국제적 정부 및 비정부기구 그리고 농약산업계의 공동행동을 통해 공표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 12.2 이 규약은 최적표준영농법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는 정부, 개별 또는 지역별 그룹, 농약산업계, 국제기구, 농약사용자 기구, 농산물 산업계와 슈퍼마켓 같은 식품산업계가 본 규약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함께 일하는 데 있어 스스로의 책임 몫을 이해할 수 있게 농약의 규제, 제조, 유통 및 사용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끌어야 한다.
- 12.3 모든 관련기구는 본 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규약을 준수해야 할 기타 기관의 능력에 상관없

이 규약에 표현된 원칙과 윤리 준수를 장려해야 한다. 농약산업계는 이 규약의 준수에 전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정부의 규약을 준수할 능력에 상관없이 규약의 원칙과 윤리를 장려해야 한다.

12.4 본 규약의 준수를 위해 취해진 어느 조치와는 독립적으로 제조책임, 소비자 보호, 보존, 오염 규제와 기타 관련 주제를 취급하는 입법, 행정, 사법 또는 관습상의 모든 관련 규정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12.5 정부와 관련 기타 기관은:

12.5.1 그들이 규약(Annex 1)에 관련된 화학물질 관리, 환경과 건강보호, 지속적인 개발, 국제 교역에 관계하고 있는 국제기구의 문서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장받아야 한다;

12.5.2 만약 그들이 그러한 법률문서에 아직 합류, 비준, 참가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빨리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규약준수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권고받아야 한다.

12.6 유엔식량농업기구 및 기타 합법적인 국제기구는 이 규약의 준수에 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12.7 정부는 유엔식량농업기구와 협력하면서 본 규약의 준수를 감시하고 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에게 그 진전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12.8 농약산업계는 본 규약의 준수와 관련된 제품의 책임관리 활동에 대해 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에게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초청된다.

12.9 비정부기구와 기타 관련 단체는 본 규약의 시행과 관련된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초청되며 유엔식량농업기구 사무총장에게 시행 활동을 보고한다.

12.10 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회는 주기적으로 본 규약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검토해야 한다. 본 규약은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를 고려하여 필요시에 최신화 해야 할 가변성 있는 주제를 재고해야 한다 <끝>. **농약정보**